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“가스사용시설”을 “가스사용시설(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21조제5항 단서 중 “아니하다”를 “아니하며, 시공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기술검토의 신청을 할 수 있고, 그 사실 및 기술검토 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4항 단서 중 “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”을 “특정가스사용시설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6항 중 “하고,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같은조 제7항 중 “하고,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제52조제3항 중 “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”을 “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”로 한다.

제56조 본문 중 “굴착공사”를 “제52조제4항·제6항, 제52조의2, 제52조의

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”로 한다.

별표5 제3호가목5)다) 중 “황색·중압인”을 “황색 또는 주황색으로, 중압인”으로 한다.

별표7 제1호가목1)자)② 본문 후단 중 “황색”을 “황색 또는 주황색”으로 한다.

별표7 제1호가목3)라) 단서 중 “사)”를 “아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가목3) 바) ④중 “별표 4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0조의2[특정가스사용시설] ①	제20조의2[특정가스사용시설] ①			
법 제14조제2항에서 “산업통상자	-----			
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	-----			
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-----			
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(이하	-----			
“특정가스사용시설”이라 한다)을	-----			
말한다.	-----			
1. (내용 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	2. -----			
미터(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	-----			
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)	-----			
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	-----	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-----			
하는 시설	-----			
가.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	가. -----			
닥·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	-----			
치되는 <u>가스사용시설</u>	----- <u>가스사용시설(가정</u>			
	<u>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</u>			
나.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	나. -----			
로서 시·도지사가 안전관리를	-----			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	-----			
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	-----			
제21조[시공감리·중간검사 및 완	제21조[시공감리·중간검사 및 완			
성검사의 대상 등]	성검사의 대상 등]			

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특정가스사용시설(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① ~ ③ (내용 생략)

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
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
도면을 첨부(가스충전시설은 제
외한다)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다만,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
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

[illegible]

-----아니하며, 시공자
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
대신하여 기술검토의 신청을
할 수 있고, 그 사실 및 기술검
토 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
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특정가스사용시설 -----

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시
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
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
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
수 있고,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
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
게 알려야 한다.

제25조[정기검사]

① ~ ⑤ (내용 생략)

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
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
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
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
사증명서를 발급하고, 그 이후
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
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
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한국가스안전공사(영 제26조
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
설의 정기검사업무를 「고압
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5조에
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
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
다)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
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
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

-.

제25조[정기검사]
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한다.

⑦ -----

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,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(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52조 [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] ① (내용 생략)

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
2.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
3. 굴착공사의 종류·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
4.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(공동주

한다.

제52조 [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]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.

1. -----
2. -----

3. -----

4. -----

택의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,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)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

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.

④ ~ ⑦ (내용 생략)

제56조 [긴급 굴착공사]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(이하 "긴급굴착공사"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

③ -----

----- 제2항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
포함된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
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
까지 -----
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6조 [긴급 굴착공사] -----

---- 제52조제4항·제6항, 제52
조의2, 제52조의3 및 제55조의

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
고 안전점검원의 입회 아래 굴
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.

[별표 5]

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
시설·기술·검사·정밀안전진단·안
전성평가의 기준

3.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
가. 시설기준

1) ~ 4) (내용 생략)

5) 표시기준

가) ~ 나) (내용 생략)

다) 도시가스배관의 표면색
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, 매
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
인 배관은 황색·중압인 배관은
적색으로 할 것. 다만, 지상배관
중 건축물의 내·외벽에 노출된
것으로서 바닥(2층 이상의 건물
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
한다)으로부터 1M의 높이의 폭
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
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

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-

-----.

[별표 5]

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
시설·기술·검사·정밀안전진단·안
전성평가의 기준

3. -----

가. -----

1) ~ 4) (현행과 같음)

5) -----

가) ~ 나) (현행과 같음)

다) -----

-----황색 또는 주황색
으로, 중압인-----

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표 7]

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1. 배관 및 배관설비

가. 시설기준

1) 배치기준

가) ~ 아) (내용 생략)

자)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

① (내용 생략)

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,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, 중압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. 다만,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·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(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)에서 1m 높이의 폭 3cm의 황색띠를 2중

-----.

[별표 7]

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1. -----

가. -----

1) -----

가) ~ 아) (현행과 같음)

자) -----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황색
또는 주황색-----

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표 7]

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1. 제조소

가. 시설기준

1) ~ 2) (내용 생략)

3) 배관설비기준

가) ~ 다) (내용 생략)

라)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.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. 다만,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)사)①㉠를 준용할 것

마) (내용 생략)

바) 배관을 실내의 벽·바닥·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

① ~ ③ (내용 생략)

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

-----.

[별표 7]

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1. 제조소

가. ----

1) ~ 2) (현행과 같음)

3) -----

가) ~ 다) (현행과 같음)

라) -----

-----아)-----

마) (현행과 같음)

바) -----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 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 기(「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」 <u>별표 4</u> 제11호에 따 른 것을 말한다)를 설치 할 것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</u>----- ----- -----
--	---